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10일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4년 9월 10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기관과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, 승인대상, 기준,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 규정(안 제3조)
-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요건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4조)
-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5조)
-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6조)
- 승인취소, 지도·점검, 결과보고 등 규정(안 제7조~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수립을 통해, 차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, 신청절차를 표준화 및 승인기준 조항 마련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.

#### 2) 주요 내용

- 가)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(안 제3조)
- 나)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요건 및 절차(안 제4조)
- 다)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(안 제5조)
- 라)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6조)
- 마) 후원명칭 사용승인 승인취소(안 제7조)
- 바)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도·점검(안 제8조)
- 사)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보고(안 제9조)

#### 3) 검토 의견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 후원명칭 사용 및 승인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하여, 앞으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표준화하고 승인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.
- 본 제정규정안은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